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45호

「강선의 구조기준」 [해양수산부고시 제2016-209호(2016.12.8.)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7년 10월 20일
해양수산부장관

강선의 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사유

-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, 선체 현측후판으로 사용된 강재의 규격이 국제규격과 상이하여 검사집행에 혼란 발생
 - 현측후판에 사용되는 강판의 규격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일원화 하도록 현행 검사기준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선박 중앙부 사용 강판 재료의 규격 개선(안 제5조제4항)

- 선박의 중앙부 0.4L(0.4×선박길이) 구간에 있어서 파열 저지를 위하여 인성이 높은 강판을 사용할 때 강판의 두께가 12.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E급강 대신 A급강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
- * 국내 (사)한국선급을 포함하여 국제선급연합회(IACS) 소속 선급법인에서는 두께 15밀리미터 이하 강판의 경우에 E급강 대신 A급강 사용 가능
- ** 강재는 재료의 충격시험 온도에 따라 A, B, D 및 E급으로 분류되며, 두께가 감소하면 충격인성이 증가하므로 일정 두께 이하에서는 A급강

사용 가능

나. 인용법령의 현행화 및 조문 정리(안 제871조제3호 등)

-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10조제3항제7호 → 「해사안전법」 제46조제4항제7호(안 제871조제3호)
- 알기 쉽게 일부 조항 정리 및 문구 수정(안 제246조 등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선박안전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강선의 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

강선의 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단서 중 “B급강”을 “A급강”으로 한다.

제246조 중 “목”을 “호”로 하고, 각 목 중 “가”를 “1”로 “나”를 “2”로 한다.

제322조제1항 중 “목”을 “호”로 하고, 각 목 중 “가”를 “1”로 “나”를 “2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322조2의”를 “제322조의2의”로 한다.

제331조의4제1항제1호 중 “제316조 제2항”을 “제31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526조 중 “항”을 “호”로 하고, 각 항 중 “①”을 “1.”로, “②”를 “2.”로, “③”을 “3.”으로 한다.

제797조제3항 중 “제2호 가목”을 “제2호가목”으로 한다.

제871조제3호 후단 중 “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10조제3항제7호”를 “「해사안전법」 제46조제4항제7호”로 한다.

제875조제1호 중 “의”를 “각 목의”로 한다.

제881조제1항 중 “별표11”을 “별표 11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표9”를 “별표 9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표8”을 “별표 8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별표10”을 “별표 10”으로 한다.

제883조제3항 중 “별표7”을 “별표 7”로 한다.

제884조제5항 중 “별표9”를 “별표 9”로 한다.

제91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에”를 “각 목에”로 하고, 같은 호 나 목 후단 중 “선박은 규칙 제918조제3항”을 “선박은 제918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2. ~ 5. (생 략) ② ~ ③ (생 략) 제526조(늑골브래킷) 늑골브래킷의 치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정하고 그 자유변은 플랜지를 주어야 한다.</p> <p>①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측정된 브래킷의 상단의 높이는 선체중심선에서의 늑판의 규정높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늑골의 내단으로부터 늑판상단을 따라 측정된 브래킷의 암은 선체중심선에서의 늑판의 규정높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두께는 그 곳에 있어서의 늑판의 규정의 두께 이상으로 한다.</p>	<p>2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제526조(늑골브래킷) ----- ----- 호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. 2. ----- ----- ----- -----. 3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97조(웨브의 최소두께 및 휨보강재의 치수) 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각 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종거더 및 트랜스버스의 웨브의 두께 t 는 제788조제4호에 의한 것 및 다음 식에 의한 것 중 큰 것 이상이어야 한다. 용골상면 상 $D/3$ 또는 갑판으로부터 2 번째의 크로스타이의 하부 면재</p>	<p>제797조(웨브의 최소두께 및 휨보강재의 치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의 하면 중 낮은 쪽의 곳보다 상부에 있는 거더의 웨브에 대하여는 식의 첫째 항에 0.85를 곱한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<u>제2호가목</u> 및 나목에 따른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호가목</u> ----- -----.</p>
<p>제871조(요건 미달 산적화물선에 대한 기준 적용) 1999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산적화물선으로서 횡수밀격벽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제867조제3호의 요건을 적용할 수 없는 산적화물선이 다음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67조제2호 및 제868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p>	<p>제871조(요건 미달 산적화물선에 대한 기준 적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2. (생략) 3. 특정 화물창의 침수 시나리오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. 이 경우 이 정보는 「<u>해상교통안전법</u>」 제10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비상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정보는 선원의 교육 및 훈련에 사용할 것</p>	<p>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. ----- 「<u>해사안전법</u>」 제46조제4항제7호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875조(침수후의 평형요건) 산적화물선의 침수시의 평형요건은</p>	<p>제875조(침수후의 평형요건) 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고체산적화물을 운송하는 산적화물선은 <u>별표9</u>에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수직과형 횡수밀격벽을 갖고 있으며 제2항 규정을 적용받는 산적화물선은 <u>별표8</u>에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다음 각 호에 관하여는 <u>별표 10</u>에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제883조(적용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국부장도를 검토할 때 <u>별표7</u>의 제5호 아목 (6) 규정을 적용하며 국부장도계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884조(일반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이 절의 규정에 추가하여 선박의 길이가 150미터이상이고, 산적화물밀도가 1.0(톤/세제곱미터)이상인 산적화물을 운송하는 단일선측구조를 가진 산적화물선의 경우에는 <u>별표9</u>에도 적합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<u>별표 9</u> ----- ----- ③ ----- ----- ----- <u>별표 8</u> ----- ----- ④ ----- <u>별표 10</u> 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 제883조(적용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별표 7</u> ----- 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 제884조(일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 9</u>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가진 수직의 수밀구획을 가진 선박은 규칙 제918조제3항에서 요구되는 수위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----- <u>선박은 제918조제3항</u> ----- ----- -----.</p>